

 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안 전 제 도 과
	2017년 8월 31일(목) 조간 (8. 30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김범석 서기관 백구현 서기관 최강선
		연락처	044-205-4140 044-205-4141 044-205-4144

안전기준 심의·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

- 안전기준 473개 등록 대상 선정, 연말까지 등록 -

- 정부가 교통, 에너지, 식품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. 정부가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내 안전 수준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안전 기준 심의·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.
 -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물질 등의 제작, 유지·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(법, 시행령, 시행규칙), 행정규칙(고시, 훈령 등)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.
 -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안전 기준을 일괄 조사하여 심의·등록함으로써 안전 기준 상호간 중복·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하고, 없거나 미비한 안전 기준은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고, 올해 연말까지 모두 등록할 예정이다.
 - 이와 관련 29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를 등록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.

-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*은 생활과 밀접한 산업, 건축, 교통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, 이번 안전기준 심의·등록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00개, 건축 및 시설 분야 66개,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34개

-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“안전 관리는 안전기준에서 시작된다.”라고 강조하면서“ 안전 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— < 안전기준 개요 > —

- ▶ (정 의)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,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적용하는 기술적 기준
- ▶ (형 태) 법령(법, 시행령, 시행규칙), 행정규칙(고시, 훈령 등) 형태로 존재
- ▶ (등록절차) 등록 요청(부처) → 안전기준심의회 심의·확정 → 부처 통보
- ▶ (안전기준심의회)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(의장), 민·관 위원 20명으로 구성

I

추진개요

□ **추진배경**

- 각 부처에서 안전기준을 개별 관리하고 있어, 안전기준의 상충, 혼선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

⇒ 안전기준 심의 등록제도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 및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

□ **안전기준 개요**

- (정의) 각종 시설, 물질 등의 제작,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(재난안전법 제3조)

- ▶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 등록 요청
- ▶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심의회*의 심의로 확정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 * 의장포함 20명 위원으로 구성

- (분야 및 범위) 건축, 교통, 환경 등 8개 분야(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)

안전기준의 분야	안전기준의 범위
1. 건축 시설 분야	다중이용업소, 문화재 시설, 유해물질 제작·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·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
2. 생활 및 여가 분야	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,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
3. 환경 및 에너지 분야	대기환경·토양환경·수질환경·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,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
4.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	육상교통·해상교통·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부대시설,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
5. 산업 및 공사장 분야	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(공장시설을 포함한다)
6. 정보통신 분야	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안전기준
7. 보건·식품 분야	의료·감염, 보건복지, 축산·수산·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
8. 그 밖의 분야	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3조의9에 따른 안전기준 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

□ 조사 개요

- (조사목적) 부처별 소관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기준 통합관리
- (조사기간) '16. 12. ~ '17. 2.
- (조사결과) 안전기준 등록대상 473개(16개 부처)

※ 안전기준 소관 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·조정(6회, '17.1~6)

□ 조사 현황

- (형식별)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(고시, 훈령 등)에 규정한 안전기준이 대다수를 차지

계 (단위 개)	법	시행령	시행규칙	행정규칙
473	16	53	265	139

- (분야별) 환경 분야, 공사장·산업 현장에서의 시설 이용 및 관리, 건축 분야와 관련된 안전기준이 대다수

부 처 \ 분 야	계	분 야					
		환경 및 에너지	산업 및 공사장	건축 시설	교통 및 교통시설	보건 식품	기타 (정보통신 생활 등)
계	473	128	106	80	66	54	39
국토교통부	200		100	66	34		
환경부	72	72					
보건복지부	38					38	
산업통상자원부	30	30					
소방청	27	13		14			
해양수산부	24	5			14		5
행정안전부	20	1			8		11
농림축산식품부	16					16	
기타 (8개 부·청)	46	7	6		10		23

□ 주요 내용

○ (환경 및 에너지) 환경 및 인체에 위험한 유해물질에 관한 안전기준(128개)

- ▶ **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** (환경부, 석면안전관리법)
 - 석면건축자재의 인체 노출 가능성, 손상 상태, 석면함유량 등 위해성 평가 등
- ▶ **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** (해수부, 해양환경관리법)
 -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시 필요한 장비, 시설기준 및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등

○ (산업 및 공사장) 각종 공사·산업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(106개)

- ▶ **타워크레인의 성능유지기준** (국토부, 건설기계관리법)
 - 주행속도 및 변형·부식 상태, 구조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갖춰야할 성능 기준
- ▶ **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주제동장치 설치기준** (국토부, 건설기계관리법)
 - 결함을 알려주는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,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등

○ (건축시설) 소방·건축시설의 구조나 설비 관련 안전기준(80개)

- ▶ **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** (국토부, 건축법)
 - 화재발생 시 연기·열 감지기, 자동폐쇄장치 구비 등 셔터의 구성, 설치 위치 등
- ▶ **건축물의 피난시설** (국토부, 건축법)
 -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제작·설치기준, 대피공간의 규모, 구조에 관한 기준 등

○ (교통 및 교통시설) 교통·부대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(66개)

- ▶ **철도시설의 기술기준** (국토부, 철도안전법)
 -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할 피난로 및 피난설비, 소방시설 등 제작·설치 기준
- ▶ **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** (국토부, 주차장법)
 - 방호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 설계기준, 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

○ (보건·식품분야) 감염·복지 등 위생관련시설 이용과 운영관련 안전기준(54개)

- ▶ **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** (복지부,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)
 - 간이진료시설, 격리된 진료실 등 감염병관리시설이 갖춰야할 시설 기준
- ▶ **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** (복지부, 아동복지법)
 - 아동복지시설이 갖춰야 할 피난·화재방지 시설, 구호설비 등
 - 아동제품의 위해(危害)방지에 필요한 사항 표기, 놀이시설 안전기준 등